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15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현행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기재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1호서식)

나. 현행 법령*에 맞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 노동조합에 맞는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 노조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한다. 임원 현황에 기재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라.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인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능하도록 사용자 정보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1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 [] 설립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소속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귀하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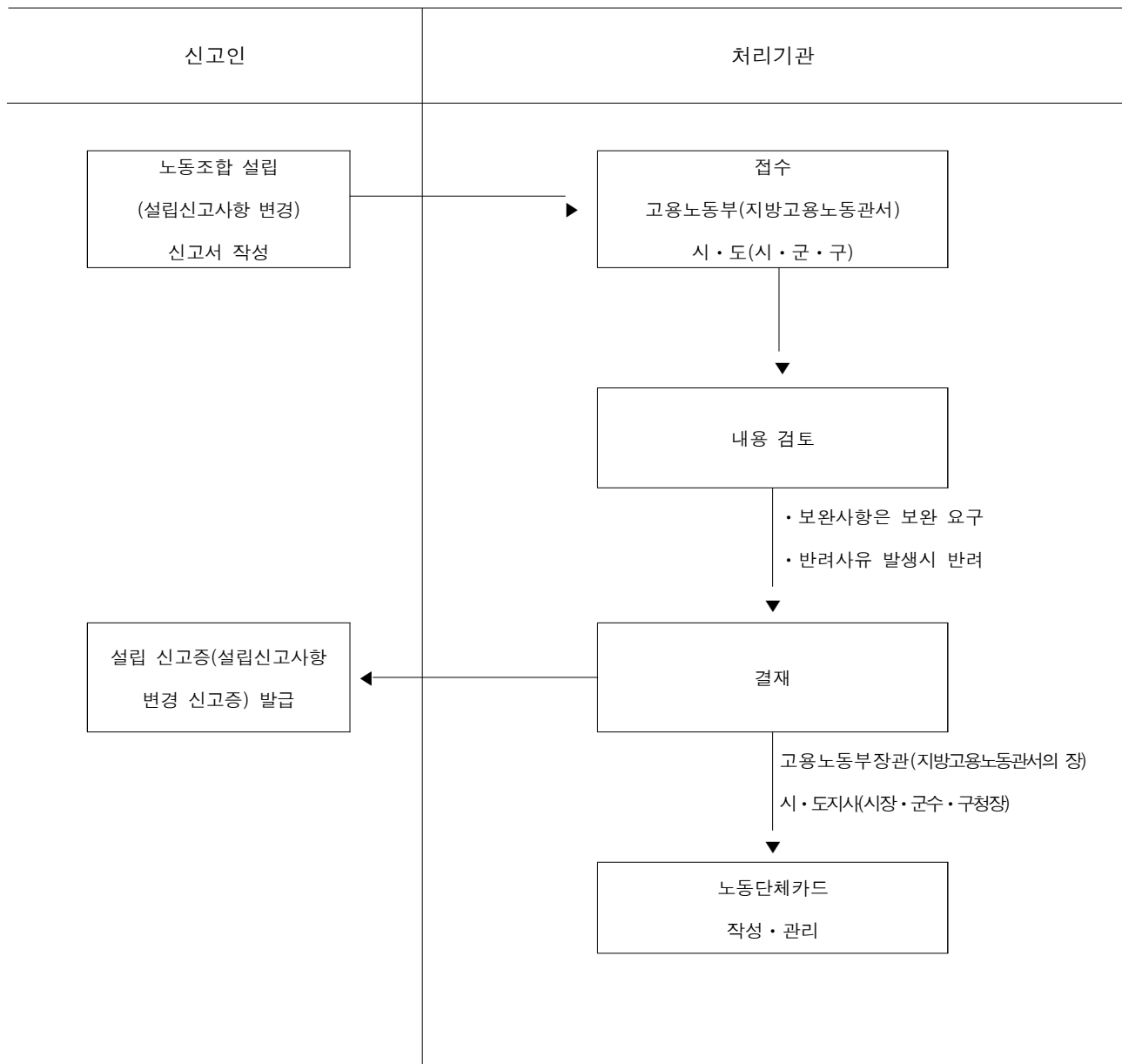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의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 2~4쪽의 작성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1 일 반 현 황	①노동조합명				②대표자 성명		③노동조합 설립일	
	④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⑤주된 사무소 소재지				
	⑥상급단체 유무 [] 있음 [] 없음			⑦상급단체명 (총연합단체명) (연합단체명)				
	⑧노동조합 형태 * 단위노동조합 :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 * (총)연합단체 : [] 산업별 연합단체 [] 총연합단체				⑨초기업 노동조합 조직형태 [] 지역별 노동조합 [] 산업별 노동조합 [] 직종별 노동조합 [] 전국(지역·산업·직종 무관)			
	⑩전체 근로자 수(사업(장) 기준) 명 (남: 명, 여: 명)				⑪조합원 수 명 (남: 명, 여: 명)			
	⑫담당자 성명				⑬담당자 연락처			
	⑭임원 현황							
	직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선출기관	임기 (개시일~만료일)	근속연수	임원 재임기간
					~			
					~			
					~			
					~			
					~			

②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초기기업별 단위노동조합만 작성합니다.

① 산하조직 명칭			② 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산하조직 대표자	④ 산하조직 소재지	⑤ 사업(장)명	⑥ 사업(장) 소재지	⑦ 근로자 수 (사업(장) 기준)			⑧ 조합원 수		
1수준	2수준	3수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③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

※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만 작성합니다.

① 구성단체 노동조합명	② 구성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재지	④ 구성단체 노동조합 대표자	⑤ 근로자 수 (사업(장) 기준)			⑥ 조합원 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첨부서류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작성 유의사항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초기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 ②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 】을 작성합니다.

※ (총)연합단체는 【 ③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 】을 작성합니다.

※ 작성 시 3~4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1. 일반 현황

(①노동조합명, ②대표자 성명, ③노동조합 설립일, ⑤주된 사무소 소재지, ⑦상급단체명)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또는 변경신고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약칭이 아닌 명칭 전체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변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변경된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④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노동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조합원이 소속된 회사(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⑦상급단체명) 직상위 상급단체명 뿐만 아니라 최상위 상급단체명까지 상세히 적습니다(○○총연맹 ◇◇연맹 등). 총연합단체는 상급단체명을 적지 않습니다.

(⑧노동조합 형태) 아래의 구분 방법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 /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동종 지역, 직종 또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동종 산업의 여러 개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동조합(00연맹) / (총연합단체) 여러 개의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규모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동조합(00총연맹)

(⑨초기업 노동조합 조직형태)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아래의 구분 방법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및 (총)연합단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노동조합) 기업을 초월하여 일정 지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결합한 노동조합 / (산업별 노동조합)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결합한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 기업 또는 산업과 상관없이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결합한 노동조합

(⑩전체 근로자 수)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성별 구분). 종사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 전체 근로자 수는 【 ②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 또는 【 ③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의 근로자 수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⑪조합원 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총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성별 구분). 조합원 수는 【 ②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표의 ‘1수준’ 산하조직의 조합원 수의 합 또는 【 ③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의 조합원 수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⑫임원 현황)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임원 현황을 적습니다. 선출기관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 해당하는 기관을 적습니다.

2.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

○ 단위노동조합(기업별, 초기업별 노동조합)만 작성합니다. (총)연합단체는 “해당없음”으로 적고 【 ③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을 작성합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현황을 작성합니다. 이어서 산하조직별로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사업(장)별 현황을 작성합니다. 산하조직이 없는 경우 ‘산하조직 명칭’은 작성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사업(장)별 현황을 작성합니다. 아래 세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①산하조직 명칭) 직제수준 순으로 모든 산하조직 명칭을 적습니다. 직제수준이 ‘표’의 3수준보다 많은 경우 3수준 우측 옆에 칸을 추가합니다.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최하위 산하조직을 제외한 각 상위 산하조직 옆에 소계를 적습니다. 아래 ‘작성 예시’ 서울본부 및 A지부 옆 ‘소계’

상위 산하조직에 직가입한 조합원이 있는 경우 ‘직가입’으로 적습니다. 아래 ‘작성 예시’ 서울본부 옆 ‘직가입’

(②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산하조직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⑤사업(장)명) 사업(장) 단위로 편제된 산하조직과 같은 줄에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아래 ‘작성 예시’ ◇◇지회, △△지회, B지부 ‘행’에 (주)◇◇, (주)△△, (주)○○ 만약 하나의 산하조직에 속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줄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하조직은 사업(장)명에 “미소속”으로 적습니다. 아래 ‘작성 예시’ 서울본부 직가입 및 경기본부

(⑥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그 주소가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소재지와 같은 경우 “좌동”이라고 적습니다.

(⑦근로자 수) 각 사업(장)별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하조직은 근로자 수를 생략합니다.

(⑧조합원 수) 모든 산하조직별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아래 ‘작성 예시’ 서울본부의 조합원 수는 직가입 + A지부 + B지부 조합원 수를 합한 수입입니다. A지부 조합원 수는 ◇◇지회 + △△지회 조합원 수를 합한 수가 됩니다.

<작성 예시>

①산하조직 명칭			②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산하조직 대표자	④산하조직 소재지	⑤사업(장)명	⑥사업(장) 소재지	⑦근로자 수 (사업(장) 기준)			⑧조합원 수		
1수준	2수준	3수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서울본부	소계		111-11-11111	홍○○	서울 중구 ○○로 ○○○	-	-	-	-	-	50	25	25
"	직가입	-	해당없음	-	-	미소속	-	-	-	-	10	5	5
"	A지부	소계	222-22-22222	김○○	서울 종로구 ○○길 ○○	-	-	-	-	-	20	10	10
"	"	◇◇지회	333-33-33333	정○○	서울 영등포구 ○○로 ○○	(주)◇◇	좌동	20	10	10	10	5	5
"	"	△△지회	해당 없음	최○○	서울 마포구 ○○로 ○○	(주)△△	서울 마포구 □□로 □□	20	10	10	10	5	5
"	B지부		444-44-44444	이○○	서울 구로구 ○○로 ○○	(주)○○	서울 구로구 □□로 □□	30	10	20	20	10	10
경기본부			555-55-55555	황○○	경기 성남시 ○○로 ○○	미소속	-	-	-	-	30	15	15

작성 방법

③ (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

○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만 작성합니다. 단위노동조합(기업별, 초기업별 노동조합)은 “해당없음”으로 적고 【 ②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을 작성합니다.(총)연합단체를 구성하는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 현황을 아래 세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②구성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구성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조합원이 소속된 회사(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⑤근로자 수) 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구성단체 노동조합이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들로 조직된 경우 근로자 수는 생략합니다.

(⑥조합원 수) 구성단체별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각 구성단체가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의 조합원 수와 같아야 합니다.

<작성 예시>

□ 총연합단체

①구성단체 노동조합명	②구성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재지	④구성단체 노동조합 대표자	⑤근로자 수 (사업(장) 기준)			⑥조합원 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노동조합연맹	111-11-11111	서울 중구 ○○로 ○○○	홍○○	60	30	30	40	20	20
△△노동조합연맹	해당 없음	서울 종로구 ○○길 ○○	김○○	50	30	20	20	10	10

□ 연합단체

①구성단체 노동조합명	②구성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재지	④구성단체 노동조합 대표자	⑤근로자 수 (사업(장) 기준)			⑥조합원 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노동조합	222-22-22222	서울 영등포구 ○○로 ○○	정○○	-	-	-	20	10	10
@@노동조합	해당 없음	서울 마포구 ○○○로 ○○	최○○	20	10	10	10	5	5

노동단체카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①카드 구분	㉠설립 ㉡변경 ㉢해산			②관할 행정관청													
③명칭				④전체 근로자 수			총: 명 (여: 명)			⑤조합원 수			총: 명 (여: 명)				
⑥주된 사무소 소재지										⑦전화번호							
⑧설립일	20 . . .		⑨기업 또는 사업장명				⑩산업 종류 코드 번호				⑪소속 연합단체 약칭, 코드번호						
⑫조직형태	㉠조직단위		㉡기업 ㉢지역 ㉣산업 ㉤직종 ㉥전국(지역, 업종 무관)														
	㉦조합형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⑬습제도	㉠오픈 습 ㉡유니온 습 ㉢클로즈드 습			⑭대표자 임기				⑮대의원 수			명			⑯조합비 징수기준			
⑰규약상 정기회의 개최시기	㉠총회: 월 ㉡대의원회: 월		⑱해산일		20 . . .		⑲ 해산 사유				㉢결의 ㉣합병 ㉤분할 ㉥노동위원회 의결(휴면노조) ㉦폐업 ㉧조합원 수 ㉨기타						
⑳단체협약 유효기간	20 . . . ~ 20 . . .			㉠임금협약 유효기간						20 . . . ~ 20 . . .							
㉡단체협약 교섭방식	㉢기업별 ㉣통일 ㉤대각선 ㉥공동			㉦임금협약 교섭방식						㉧기업별 ㉣통일 ㉤대각선 ㉥공동							
㉣근로시간 면제자 수	합계 명 (풀타임 명, 파트타임 명)			㉤근로시간면제자 월 평균 보수						천 원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생년월일	선출기관	임기 (개시일~만료일)	근속연수	임원 재임기간

(뒤쪽)

㉞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

산하조직 명칭			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산하조직 대표자	산하조직 소재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사업(장) 기준)			조합원 수		
1수준	2수준	3수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㉟(총)연합단체의 구성단체 현황

구성단체 노동조합명	구성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구성단체 노동조합 소재지	구성단체 노동조합 대표자	근로자 수 (사업(장) 기준)			조합원 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작성 방법

□ 공통사항

- 아래 작성방법에 없는 항목들은 별지 제4호서식(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 ②: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명(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시·도, 시·군·구)을 적습니다.
- ③: 노동조합 명칭을 적습니다(약칭이 아닌 노동조합 전체 명칭을 적습니다).
- ④: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⑨: 기업별(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⑩: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를 참고하여 조직대상 사업장의 주된 산업 종류를 적습니다.
- ⑪: 소속 연합단체의 약칭과 코드를 적습니다.
- ⑫: 조합비 징수기준을 적습니다.
- ㉞·㉟:
 - ㉞기업별: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노조와 그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을 말합니다.
 - ㉟통일교섭: 전국적(지역적) 규모의 산업별(직종별) 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용자대표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㊱대각선교섭: 전국 단위의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㊲공동교섭: 개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공동으로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적습니다.
- ㉢: 선출기관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 총회
 - 대의원회
- ㉣: 산하지부 또는 분회 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제 호

[] 노동조합 규약
[] 노동조합 결의·처분 의 시정명령서
[] 단체협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 명칭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 또는			전화번호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시정명령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 노동조합 규약
[] 노동조합 결의·처분 의 시정을 명합니다.
[] 단체협약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직인

※ 비고: 시정명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